

金輸出의 展開와 砂金開採條例의 成立*

朴 賛 一*

目 次	
第 1 節 金輸出의 市場環境	「엔」貨의 地方市場에의 浸透
1. 金輸出展開當時의 貿易環境	2. 對朝鮮 銀貨 「엔」流出政策과 日本銀行券의 朝鮮內流通
2. 金輸出展開當時의 國內市場 環境	3. 金分析所設置의 意味와 效果
3. 初期外換市場의 特性과 金 需要의 增大	4. 日帝의 金吸收政策의 意味와 其成功要因
第 2 節 金輸出의 展開	5. 日帝의 金吸收政策의 成功事 例—元山의 경우를 中心으로—
1. 清日戰爭以前의 金輸出의 展開와 日本의 金吸收政策	第 4 節 新로운 鐵業政策：砂金開 採條例의 成立
2. 清日戰爭以後의 金輸出의 規模과 構造	1. 砂金開採條例 以前의 鐵業政 策
第 3 節 清日戰爭以後의 日本의 金吸收政策	2. 砂金開採條例의 成立와 性格
1. 半殖民地的 近代貨幣制下	

第 1 節 金輸出의 市場環境

1. 金輸出展開當時의 貿易環境

清日戰爭 이후의 東아시아 특히 中國과 韓國은 西유럽 및 美國·日本의 獨占資本主義=帝國主義에 의하여 植民地分割競爭의 對象으로 되었고 國際貿易은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展開되기 시작하였다.

단순한 商業市場擴大 原料基地擴大를 넘어서 先進獨占資本은 鐵業, 鐵道 및 銀行業 部門에 대한 資本進出을 현저히 強化하기 시작하였다. 이點에서는 韓國도 例

(韓國外國語大學校, 副教授; 韓國經濟史專攻)

* 이 論文은 博士學位論文 「韓末金輸出과 金礦業德大經營에 관한 研究」中 國際經濟環境과 政策環境의 性格을 다룬 부분을 옮겨 놓은 것이다.

外는 아니다.

開港初期부터 韓末에 이르기까지 朝鮮의 國際貿易은 租界貿易(=半殖民地貿易)이었으며 주로 日商貿易資本과 清商貿易資本이 貿易支配權爭奪을 둘러싸고 競爭하고 있었다.

韓末에 이르면 日本資本主義는 부분적으로 產業革命을 완수하고 金本位制를 確立하여 西유럽의 植民地化 危機를 극복하고 東아시아 帝國主義 市場分割競爭에 參與하여 對朝鮮貿易을 仲繼的 租界貿易으로부터 直接的 租界貿易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清商의 朝鮮貿易은 開港初期와 과찬가지로 仲繼的 租界貿易이었으며 대체적으로 거의 輸入貿易에 편향된 채 輸入貿易의 市場圈을 中心으로 日商과 競爭하고 있었다.

開港初期부터 韩末에 이르기까지 貿易과 關聯된 聯關產業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海上保險業, 海運業, 銀行業 및 外換市場은 日本資本에 의하여 거의 獨占되었으며 이러한 點에서 日本貿易資本도 清商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한 競爭力を 가지고 있었다.

開港初期에는 租界內 日本人 銀行支店의 葉錢受託所가 外換市場이었지만 韩末에 이르면 租界를 넘어서 條約港(開港場)全體가 國家의 主權이 배제된 半殖民地의 自由外換市場이었다. 金塊는 이제 商品으로서 뿐만 아니라 決濟手段으로서의 意義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

銀行과 近代的 外換市場을 갖지 못한 채 편향된 輸入貿易에 從事하는 清商에게는 金塊의 買入과 輸出은 商品輸出로서 뿐만 아니라 金現送(正貨輸出)의 機能을 갖고 있었다.

日商과의 貿易競爭이라는 點에서 볼 때 清商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點은 英國產 면직물의 價格競爭力과 品質競爭力뿐이며 日本이 덤핑을 할 때 清商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건에서 朝鮮人 商人資本은 發展하지 못하고 日商과 清商에 대하여 下請의 貿易資本 또는 從屬의 商人資本에 불과하였다. 日·清을 競爭的 需要者로 갖고 있는 輸出商品의 경우(예컨대 金塊) 從屬性이 상대적으로 떨하였을 것이다.

2. 金輸出展開當時의 國內市場環境

먼저 貨幣制度는 甲午改革 以後 銀本位制로서 近代的 外形을 갖추긴 했지만 國家主權을 상실당한 채 日本貨幣가 方法上으로나 實質的으로 外換市場을 넘어 國內

市場에 流通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貨幣制度마저 半殖民地化되었다. 國民的 市場圈形成의 貨幣制度의 條件이 박탈당하였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租界는 元山, 仁川, 釜山을 넘어서 중요한 地方市場圈에 擴大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는 國民的 市場의 形成條件으로서의 地方市場圈이 外國資本에 支配받는 市場圈으로 再編成되었다.

鐵道의 建設, 郵便 電信, 電話등의 通信시설은 이 시기에 크게 擴充되었는데 이는 위에서 설명한 條件 아래서는 國民的 市場圈을 強化하기보다는 植民地的 市場圈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作用하였다.

한편 各 租界에서는 貿易을 통하여 원시적으로 資本을 蕪積한 在朝鮮日本人商人資本은 輸出商品의 加工, 輸入商品의 代替, 종래의 朝鮮人手工業製品의 部門에서 產業資本으로 轉化하고 있었다. 또 日本資本을 中心으로 外國資本의 投資가 收益性 높은 重要한 產業分野에 현저히 強化되었다. 연안해운업이 日本資本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鐵道가 日本資本에 장악되었다. 銀行資本의 進出이 強化되어 金融이 장악되었다. 荷役業, 倉庫業에도 日本資本의 進出이 현저하였다. 農業에 대한 土地投資도 強化되기 시작하였다.

外國資本은 銀行分野에도 進出하기 시작하였다. 운산금광에 대한 미국자본의 채굴권 獲得, 은산금광에 대한 영국자본의 채굴권 획득, 직산금광에 대한 日本資本의 채굴권 획득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石金礦에 대한 投資들이다.

砂金礦業에 대한 外國資本의 進出試圖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05年 乙巳保護條約때까지는 대부분의 砂金礦業은 朝鮮人 商人資本과 德大에 의하여 投資되고 經營되고 있었다.

3. 初期 外換市場의 特性과 金需要의 增大

한국은 개항전 商去來活動에서一般的으로 엽전 또는 상평통보(日本은 開港期에 이를 韓錢이라고 부름)를 사용하였다. 李朝末 商品經濟의 發展에 따라 엽전의 통화권은 확대되었다. 計算이 번잡스럽고 휴대가 불편하였지만 엽전은 現實의 商去來에 使用되었다. 以下에서 우리는 葉錢制를 銀本位制에 先行하는 韓國의 金屬貨幣制로서 銅貨(錢)制라고 부르기로 한다.

開港以後 貿易이 擴大되고 外國通貨가 租界에 流入되었다. 무역이 展開됨에 따라 外貨와 葉錢과의 交換이 이루어지고 原始의이나마 外換市場이 形成되었다. 그 外換市場과 貿易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곡과 大豆 등의 商品輸出에 從事하는日本人 貿易商은 租界에서 한국의 客主商

人으로부터 商品를 買入하거나, 또는 買入商을 農村에 보내어 買入하거나, 農村에 있는 日本商人을 통해 買入한다. 그러나, 대개 客主商人을 통해 商品을 買入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한편 租界에서 外國人 貿易商이 輸入商品을 客主에게 팔면, 客主 또는 中國商人은 사들인 寒冷系 等의 級製品과 雜製品을 韓國의 지방시장에 販賣한다. 한편 農產物輸出에 從事하는 日本人 貿易商은 日本 金融機關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그리고 깊숙히 農村에 파고들어가 地方守令 및 아전과의 관계를 맺고 農產物을 買入한다. 한편 輸入商品을 取扱하는 日本商人은 대개 中小零細規模의 商人들이었다. 在韓 清商과 韓國의 客主商은 커다란 資本力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朝鮮貿易에 있어서 在韓日人輸入商과의 競爭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客主資本은 外國人 貿易商을 돋는 中間商人의 役割 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貿易이 展開됨에 따라 條約港에는 原始의이나마 外換市場이 成立된다. 條約港에서는 日本貨幣가流通되고 있었다. 當初 租界에는 清商이 가지고 온 馬蹄銀과 멕시코 銀貨(Mexican Silver Dollar) 및 日本銀貨「엔」이流通되고 있었지만 1879年以後에는 멕시코 銀貨는 日本貨幣에 의해 구축되고 日本貨幣가 租界內 外換市場을支配하게 되었다. 이것이 日本經濟와 日本貿易商에 주는 利益은 굉장한 것이었다. 요컨대, 일찍부터 開港된 釜山·仁川·元山 등의 租界에서는 日貨의 流通圈, 即銀貨圈이었지만, 그밖의 地方市場에서는 朝鮮貨幣圈, 즉, 銅貨圈이었다. 租界的 日本貨幣圈과 地方市場의 朝鮮貨幣圈(銅貨圈)은 서로 對立關係에 있었으며 동시에 경쟁하고 있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租界와 地方市場을 연결하는 商品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에 있어서 그 狀況은 租界에 따라 또는 時期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在韓日人 貿易商 등의 外國人貿易商은 輸入商品을 朝鮮人中間商(客主資本)을 통하여 地方市場에 販賣하는 流通經路를 가지며, 販賣代金으로는 葉錢을 받는다. 이들 輸入商들은 이 葉錢을 金塊로 바꾸든가 또는 韓錢受託所에 가지고 가서 外國通貨(日本銀貨 또는 日本태환권)와 바꾸어 本國으로 送金한다. 輸入貿易에만 종사하는 在朝鮮清商은 外換制度의 未發達로 換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貿易決濟는 주로 金·銀의 現送으로 한다. 여기에 金需要形成의 背景이 있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 在朝鮮外國人輸出商은 外國通貨(日本銀貨 또는 태환권)를 葉錢(韓錢受託所에 流入된 것을 포함함)으로 바꾸어 朝鮮人 客主商을 통하여 地方市場에서 生產者로부터 쌀과 大豆 등 農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수출한다. 輸出商은 수출의 결과 日本貨幣를 받는다. 한편, 수출상을 통해 葉錢을 받은 生產者=農民

은 이것을 購買力으로하여 輸入商으로부터 輸入商品을 購入할 수 있게 된다. 즉, 葉錢은 輸入商으로부터 輸出商으로 흐르고 다시 輸出商으로부터 生產者이며 消費者인 農民에게 흐른다. 그리고 농민보유의 엽전은 다시 수입상의 손에 들어간다. 이것이 貿易商品과 貨幣의 흐름의 構造이다. 租界는 아무리 植民地化되었더라도 地方市場은 通貨制度面에서는 植民地化되지 않은 狀態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地方市場圈을 清商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日本商人은 地方市場에 日本貨幣를流通시키려고 努力하였다.

한편. 租界와 地方市場과의 商品去來에 대응하여 원시적이나마 外換市場이 形成되고 外國貨幣와 엽전과의 交換比率인 外換時勢 또는 換率(當時의 半殖民地狀態下에서 우리의 外換市場을 장악하고 있던 日本은 自己의 立場에서 韓錢時勢라고 불렸다)이 形成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立場에서 해석할 때에는 韓錢時勢를 葉錢時勢라 表記하고 日貨時勢로 바꾸어 불러도 좋을 것이다. 한편 당시의 換時勢인 葉錢時勢는 당시의 輸出入의 規模에 의하여 決定된다. 즉, 輸出이 활발하면, 따라서 葉錢수요가 커지면,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葉錢時勢는 일정한 범위에서 上昇할 것이다. 또 이와는 반대로 조선의 수입이 증가하면 外換市場內에 葉錢供給이 증가하여 相對的葉錢需要가 減少하므로 葉錢時勢는 低落하게 된다. 또 한국전체로서의 葉錢供給이 상당히 고정적이므로, 한 租界內에서의 葉錢時勢의 增加 또는 減少는 다른 租界的 葉錢시세에 영향을 준다. 이와같이 엽전시세는 매우 복잡하게 變動한다. 이러한 엽전시세의 변동은 貿易의 계절변동이 심한 開港初期에 더욱 격렬하였을 것이며, 이것은 日人貿易商에게 原始的 資本蓄積과 金需要의 큰 계기로 되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 첫째, 이러한 엽전시세의 변동은, 朝鮮의 地方市場의 成長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화폐로서의 엽전이 갖는 운반의 불편성은 지방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또하나의 요인이었다.

第2節 金輸出의 展開

1. 清日戰爭 以前의 金輸出의 展開와 日本의 金吸收 政策

(1) 開港直後

1876年부터 1882년까지 日本은 韓國의 對外貿易을 獨占的으로 支配하였다. 金輸出은 이러한 狀況속에서 展開되었다. 金輸出의 動向을 살펴보면 1876年下半年～1877年上半年의 1년동안 金地金의 流出은 27,237엔이었고, 1877年下半年에는 10,

246엔에 달하였다. 또 1878年에 23,811엔의 金이 輸出되었고, 1879年 64,838엔의 金이 輸出되었고 마침내 1880年에 이르면 122,446엔의 金의 輸出되었다. 日本은 獨占의 위치를 이용하여 국제시세보다 훨씬 싸게 買入하는 약탈적 매입정책을 사용하였다.¹⁾

그럼에도 이와 같은 開港直後의 金輸出은 종래의 對清 金密輸出을 배경으로 성장하던 潛採 또는 私自設店의 德大經營에 대하여 추가적 需要를 形成함으로써 金礦業의 發展에 자극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2) 清日競爭期

1882年 韓國은 清國과 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韓美通商條約, 韓英通商條約, 韓獨通商條約 등이 西歐帝國主義列強과 맺어졌다. 列強과의 通商關係는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清商과 日商이 貿易의 支配權쟁탈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인상을 주는 시기이었으며 그후 日本人 史家들은 清日競爭期라고 부를 정도로 경쟁은 치열한 시기이었다.

따라서 첫째 日商에 의한 저렴한 차취적 金買入은 없어 되었으며 종래 보다 金時勢는 호전되었다. 이는 潛採型 物主制 德大經營의 發展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둘째, 對日貿易이나 對清貿易이 모두 仲盤貿易이었고 모두 貿易赤字를 가지면서

〈表・1〉 開港直後 韓日金貿易의 動向 단위: 円(엔)

		金 輸 出 (1)	一般 輸 出 (2)	比 率 (1)/(2) (%)
1876. 12~1877 上半期	1)	27,237	65,291	41.7%
1877年 下半期	2)	10,246	58,719	17.5%
1878年	3)	23,811	181,469	13.1%
1879年	4)	61,888	612,174	10.6%
1880年	5)	122,446	1,251,244	9.8%

資料：1) 商經年報 明治 11年
3) 橫濱毎日 明治 12年 2月 28日
5) 來經雜誌 明治 14年 7月 2日
2) 橫濱毎日 明治 11. 12月 26日
4) 來經雜誌 明治 13年 6月 15日

出處：姜德相, 開港直後における 朝鮮貿易の展開에서 再引用

〈表・2〉 金銀塊 對日輸出額(1881~1884)

1881	784,294円
1882	842,142
1883	441,621
1884	182,422
計	2,250,479

자료：伊藤彌次郎「朝鮮國鐵產斗 概要」日本鐵業誌 第9條 1885, 11월호

1) 姜德相：「開港直後における 朝日貿易の 展開」論文 참조。

<表·3>

金輸出國別 構造와 규모 (1886~1893)

	清	日 本	合 計
1886	218,743元	911,745元	1,130,488元
1887	210,294	1,177,975	1,388,269
1888	348,564	1,025,401	1,373,965
1889	373,677	608,414	982,091
1890	474,600	275,099	749,699
1891	415,790	273,288	689,078
1892	485,791	366,960	852,751
1893	493,651	425,008	918,659
			8,085,000

자료 : 朝鮮通商口岸三關貿易冊, 通商三關金子出口按國總數量 年度別로 摘出作成하였다.
韓沽勵著,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에서 再引用.

확대되고 있었으므로 金需要는 급격히 증대할 수 밖에 없었다.

세째, 對清貿易은 輸入片貿易이었으므로 貿易規模의 擴大는 그대로 正貨流出 즉 金需要의 擴大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넷째, 이러한 狀況속에서 日本이 對朝鮮 貿易市場를 장악하기 위하여 또 日本國內의 正貨準備를 위하여 朝鮮產 金吸收政策을 展開하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朝鮮에서 開港後 砂金業이 종래보다 더욱 발달하게 되는 important 요인은 日本과 清國의 砂金需要가 安定的으로 擴大되는 데 있다. 특히 砂金需要의 安定的 擴大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1882年 日本銀行設立이후 充援準備를 위하여 正貨充實을 기하고자 1884年 1月 韓國에서의 砂金 및 地金 銀買入에 第1銀行 朝鮮內 支店·出張所가 착수하였다는 사실이다.²⁾ 실제로 朝鮮內 第1銀行 支店과 出張所는 「1886年(明治 19年) 5月에 이르러 大藏省(日本의)의 指令에 따라 日本銀行과의 사이에 約定을 맺고 그후 1889年(明治 22年) 8月까지 260餘萬[엔]의 地金·銀을 日本銀行에 납부하였다.」³⁾

朝鮮產 金買入과 中國의 tael貨 買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日本政府의 이와같은 강력한 金融支援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日本의 松方 大藏省卿은 1884年 2月 13日字 指令 第246號로서 中國의 銀兩과 朝鮮의 砂金買入代金 30萬엔을 年 4%의 利子로서 年 2回 6個月間 短期貸付를 日本 第1銀行에 行하였다.⁴⁾ 그리하여 日本 第1銀行의 朝鮮內 支店 및 出張所는 이 先貸資金을 기초로 1886年 5月 이후 砂金買入에 착수하였다.⁵⁾

2) 濱澤英一傳記資料 第16卷 p. 19 참조.

3) 같은 책 같은 면, 참조.

4) 같은 책 p. 20 참조.

5) 같은 책 p. 21 참조.

〈表・4〉 開港初期 朝鮮의 金輸出 단위 : 천엔

	金貨·金地金(1)	日本의 金貨·金地金 輸入總額(2)	比率 (1)/(2) %
1880	113	138	81.88%
1881	468	469	99.8%
1882	530	530	100%
1883	564	564	100%
1884	324	327	99.1%
1885	599	609	98.8%
1886	990	1,165	85.0%
1887	1,217	1,260	96.6%
1888	1,192	1,203	99.1%
1889	749	750	99.9%
1890	360	360	100%
1891	282	233	99.7%
1892	395	395	100%
1893	493	497	99.2%
1894	556	556	100%
1895	1,030	1,030	100%
1896	833	10,217	88.2%

資料：日本帝國統計年鑑에서 作成

이때 朝鮮政府는 元山 근처에서 사금채취를 시작하였다.⁶⁾ 이것이 아마 1887年 矿務局의 설치에 따른 矿業經營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砂金生產高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게 되고 本行(日本 第1銀行: 筆者註)에서도 더욱 買入을擴張코자 하여 1886年(明治 19年) 9月 다시 貸下金의 義를 대장성에 청원하였는데 同月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3個年の 기한으로 先貸金 10萬엔을 許可받게 되었다. 당시 한일무역은 아직 활발하지 않고 荷換어음도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砂金買入도 朝鮮內 清商과 경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地金買入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 1886年 5月부터 1889年 8月까지 日本銀行에 납부한 地金·銀의 貨幣價值는 260萬엔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地金買入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日本銀行은 다시 3個年間의 貸下金의 연리를 정하는 한편 利子·手數料를 경감하여 在韓日商으로 하여금 사금매입에 힘쓰게 하였다.⁷⁾

다시 1897年(明治 30年) 日本은 貨幣制度를 改革하여 金貨本位制를 실시하자 日本銀行은 韓國產金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여 第1銀行에 위촉하여 韓國의 地

6) 같은 책 p. 21 참조.

7) 濵澤英一傳記資料 第16卷 p. 21 참조.

金供給의 규모를 조사시키고 마침내 兩銀行間에 韓國產 金地金買入의 契約을 체결 시켰다.⁸⁾

2. 清日戰爭이후의 金輸出의 規模와 構造

韓末에 있어서 政府에 의하여 經濟統計가 作成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商品輸出經濟의 發達에 대한 供給 및 需要를 商品別로 正確히 把握한다는 일은 거의 不可能하다. 金도例外는 아니다. 特히 金供給의 추세, 그 가운데에서 德大經營에 의한 金生產의 추이를 把握하는 일은 거의 不可能하다. 다만 在鮮朝 日本領事館은 殖民地工作의 일환으로 商品輸出과 商品輸入에 대한 市場調查를 行하고 있기 때문에 貿易統計는 다른 統計에 비하여 比較的 豐富한 편이다. 따라서 이를 基礎로 金輸出의 規模와 構造를 把握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金輸出은 다른 商品에 比해 서 그 統計가 不正確하다. 왜냐하면 金輸出은 원래 無稅商品이므로 海關의 檢閱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統計上으로 본 金輸出額은 實質金輸出의 全部를 意味하지는 않기 때문이다.⁹⁾

日本領事館은 實際金輸出額이 統計의 두 배 정도에 달한다고 보고 있지만 正確한 것은 알 수 없다.

이와같이 金輸出統計¹⁰⁾에 대한 信賴度가 낮다 하더라도 오차와 누락은 年年이一定하다고 보면 이 金輸出統計는 一定한 傾向을 說明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金輸出의 規模를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 金輸出의 規模는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末에 있어서 年平均 20.6 %씩 增加하였다. 金輸出額은 1894년의 934,000엔으로부터 1903년에는 5,456,000 엔으로 增加하였다. 이것은 쌀, 人蔘, 牛皮, 大豆와 함께 金이 몇 개 안되는 대종 수출상품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이 輸出統計에는 外國資本의 直接投資에 의한 金鑛經營과 金輸出이 包含되어 있다.

둘째 : 輸出의 增加率이 年 20.6%라 하더라도 年次別추이는 매우 不均等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897년에는 46.3% 增加한 반면 1902년에는 1.4%밖에 增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不安定性은 外國資本經營에 의한 金輸出을 빼면 더욱 심해진다. 이것은 德大經營에 의한 金生產과 金輸出이 事實上 매우 不安定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 같은 現狀에 대하여 在朝鮮 日本領事館은 그 原因을 農民兼 계절

8) 같은 책 같은 면 참조.

9) 通商彙纂, 第66號, p.76 참조.

10) 通商彙纂, 第66號, p.76 참조.

〈表·5〉

韓國의 金輸出推移

	金 輸 出 額	對 前 年 增 加 率
1894	934,075엔	1.7%
1895	1,352,929엔	44.8%
1896	1,390,412엔	2.8%
1897	2,034,079엔	46.3%
1898	2,375,725엔	16.8%
1899	2,933,381엔	23.5%
1900	3,633,050엔	23.9%
1901	4,993,351엔	37.4%
1902	5,064,100엔	1.4%
1903	5,456,397엔	7.7%
年 平 均 增 加 率		20.6%

資料：1894~1903年간은 통상회찬, 改第 27號, p. 35

註：외국자본의 금생산이 포함됨。

〈表·6〉

金輸出의 國別構造

단위：천엔(日貨)

年 度	日本에로의 輸出	中國에로의 輸出	合 計
1894	639	68.4%	934
1895	953	70.4%	1,353
1896	803	57.8%	1,390
1897	948	46.6%	2,034
1898	1,193	50.2%	2,376
1899	2,049	69.9%	2,933
1900	3,065	84.4%	3,633
1901	4,857	97.3%	4,993
1902	5,004	98.8%	5,064
1903	5,456	100.0%	5,456
1904

資料：통상회찬, 改第 27號, p. 35.

노동자에 대한 德大經營의 높은 依存性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즉 農產物이 豐作일 때에는 金輸出은 크게 줄어들고 農產物이 困作일 때에는 金輸出이 크게 擴大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實際로 困作時에 金輸出이 增加되고 豐作時에 減少되고 있다는 사실로 立證되고 있다.

그러나 金輸出, 따라서 金生產은 더 이상 멀어지지 않는 상당히 높은 絶對規模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德大經營이 專業的 勞動者의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資本家的 經營의 初期形態라는 것을 어느정도 說明하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國別 輸出構造는 清日戰爭 以前까지 清商과 日商의 輸出競爭이 매우 치열

하였으며 清商에 의한 필사적인 高價買入競爭 때문에 清商의 輸出이 日商의 輸出에 比하여 우세하였다.

둘째, 清日戰爭 以後부터 日本 銀行資本이 金 分析所를 設置할 때까지 (1889年까지) 清商과 日商의 金輸出은 競爭的이었다.

셋째, 金 分析所가 設置된 以後부터는 日本 銀行資本에 의하여 金輸出이 獨占되었다.

이제 金의 地域別 生產動向을 把握하기 위하여 港口別 輸出構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金 分析所가 設置되기 以前까지는 元山이 最大의 金輸出港이었다. 元山의 金輸出의 供給源을 살펴보면 함경도 地方의 金礦과 평안도 地方一部의 金礦 강원도 地方의 一部의 金礦이며 러시아로부터 유입도 包含된다.

둘째, 仁川도 매우 중요한 金輸出港이었다. 仁川港에서는 평안도 地方, 황해도 地方, 강원도 地方, 충청도 地方 等에서 生產된 金이 輸出되었다.

셋째, 金 分析所 設置 以後에는 仁川의 金輸出 比重이 상당히 높아지고 元山港의 輸出比重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金 分析所 設置 以後 金輸出統計에 美國 金礦會社의 채굴 金이 仁川統計에 包含되고 英國 金礦會社의 채굴金이 진남포 輸出統計에 包含되었기 때문이다.

〈表·7〉 港 別 金 輸 出 動 向 단위 : 엔, %

年度	輸出計	元 山	仁 川	釜 山	鎮 南 浦		
1894	934,075	100%	633,009	67.8%	157,925 16.9%	140,141 15.0%	— —
1895	1,352,929	100	869,681	64.3	316,981 23.4	166,267 12.3	— —
1896	1,390,412	100	985,034	70.8	338,806 24.4	66,022 4.8	— —
1897	2,034,079	100	985,045	48.4	976,970 48.0	72,064 3.5	— —
1898	2,375,725	100	971,530	40.9	1,258,635 53.0	145,560 6.1	— —
1899	2,933,382	100	1,011,925	34.5	1,789,080 61.0	132,377 4.5	— —
1900	3,633,500	100	1,425,576	39.2	1,927,665 53.1	121,809 3.4	158,000 4.3%
1901	4,993,351	100	1,668,245	33.4	2,556,095 51.2	122,968 2.5	646,043 12.9
1902	5,064,106	100	1,361,580	26.9	2,538,101 50.1	104,915 2.1	1,053,800 20.8
1903	5,456,397	100	1,467,111	26.9	2,128,704 39.0	117,686 2.2	1,732,200 31.8

資料 : 1894~1903年間의 통상회찬, 第27號, p. 37에서 작성.

註 : ① 진남포에서 수출되는 金地金은 은산에서 영국금광회사가 채굴한 것이며, 雲山에서 美國金礦會社가 채굴한 것은 仁川 第一銀行을 경유하여 仁川에서 日本으로 輸出된 것임.

② 평양 第一銀行 出張所의 買入金은 1904年 10月부터 시작되었는데 京城支店에 송부되고 다시 仁川를 경유하여 仁川輸出로 把握된다. 실제 거의 경성지점의 거래액임.

따라서 朝鮮人 德大經營에 의한 金輸出은 여전히 元山이 높은 比重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산의 金輸出은 그 比重이 韓末 전체를 通하여 매우 낮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第3節 清日戰爭이후 日本의 金吸收政策

1. 半殖民地的 近代貨幣制下 「엔」貨의 地方市場에의 侵透

開港後期에 이르면, 이러한 日商의 外換市場獨占의 構造가 基本적으로 維持되면서 조선무역의 量的 擴大와 日商·清商의 活動범위의 擴大가 租界의 교역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것은 日貨가 外換市場의 獨占을 넘어서 韓國의 國內通貨市場에의 침투를 의미한다. 開港當初 租界밖에서는 流通되지 않았던 日本銀貨가租界안에서 백시코銀貨를 구축하여 外換市場을 獨占한 뒤 租界를 넘어서 조선의 地方市場에 流通되기 시작한 것은 1895년 경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時期에 銀貨「엔」은 어떻게 조선의 地方市場에 流通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要因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日本과 中國은 開港初期부터 貿易擴大를前提로 英國의 지원을 받으면서 朝鮮經濟의 主權을 침해하고 있었고 조선의 地方市場에 銀貨「엔」의 流通을 強力히 推進하여 온 努力의 結果일 것이다.

둘째, 부패한 朝鮮政府와 官僚는 財政危機를 극복하는 方法으로 惡貨鑄造政策을 實施함으로써 地方市場의 貨幣制度를 혼란시키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여 地方市場은 보다 安定된 價値를 갖는 貨幣를 선호하게 된 데에도 重要한 要因이다.

세째, 英國帝國主義는 1884년 이후 日本銀貨를 조선의 관세징수에 基準貨幣로 하는 것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日本銀貨의 朝鮮內 地方流通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네째, 日帝는 1894년 8월에 開化派가 마련한 新式貨幣發行장정에 第7조의 1항¹¹⁾을 삽입함으로써 日本貨幣의 朝鮮內 地方市場流通을 法的으로 승인하였다. 이러한 法制的 制度를 근거로 하여 日本銀貨가 조선의 地方市場에 流通되는 直接的 契機를 이룬 것은 1894年과 1895年の 清日戰爭에 의한 日本軍의 朝鮮 各 地方에로의 侵略과 그에 따른 도로망의 정비, 各 地方에로의 日本商人의 進出과 日本銀貨의 살포

11) 新式貨幣發行 장정 제 7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但 爲本國貨幣同質同量同價者 許通行」(韓國貨幣整理 報告書 p. 7 참조)

이었다. 日帝軍部가 清日戰爭時 日本貨幣·특히 日本銀貨를 한국인 사이에 살포함으로써 그리고 살포규모를 늘림으로써 日本銀貨에 대한 信用과 信譽은 더욱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기·충청·황해·평안의 4도에 있어서는 韓國貨幣를媒介로 하지 않고서도 日本貨幣로써 去來를 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¹²⁾

다섯째, 그러나 부패한 조선정부는 貨幣鑄造를 營利事業으로 생각하고 所在價值를 떨어뜨리는 惡貨白銅貨鑄造政策을 展開함으로써 이른바 白銅貨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다. 이와같은 貨幣價值의 급격한 下落은 백동화 1단위와 같은 액수의 日本銀貨를 가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다 많은 白銅貨와 교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日本銀貨는 그 貨幣保有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日本貨幣流通地域을 擴大하는 決定的 契機로 되었다.

여섯째, 이러한 가운데 日本의 貨幣制度는 1897년 金本位制로 移行하였는데, 이는 이 당시의 朝鮮의 地方市場에 日本銀貨의 침투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되었다. 日韓通商協會의 報告資料에 의하면 전체로서의 葉錢(특히 白銅貨) 中心의 조선의 銅錢制가 日本銀貨에 의해 급격히 침식당하고 日本銀貨의流入은 貿易赤字幅의 크기에 관계없이 朝鮮產 金을 급격히 流出시키는 소위 金·銀換體制가 朝·日貿易의 擴大와 더불어 급속도로 進行되고 있었다.

그러면 왜 朝鮮의 銅錢制가 日本銀貨의 流入에 의해 침식당하고 半殖民地型 銀本位制가 確立되는가? 國際通貨制度가 유럽國家들의 金本位制維持를 위하여 멕시코銀貨를 國際通貨로 하는 銀本位制로 東아시아가 改編되어 가고 있던 時期이다. 日本도例外는 아니었다. 즉, 1868年 개항이후 당시간내에 金의 流出을 당하고 銀貨本位制度로 改編되었다. 朝鮮도 맨 마지막으로 銀本位制로 포섭되어 갔다. 다만 동남아시아와 다른 것은 동남아시아가 멕시코銀貨에 의하여 개편되었는데 조선은 멕시코銀貨를 구축한 日本銀貨에 의하여 개편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朝鮮의 貨幣市場을 日本의 銀貨에 의하여 銀本位制로 改編시키는 日本帝國主義政策을 전면적으로 뒷받쳐 준 것은 英國이었다. 즉, 英國帝國主義는 朝鮮의 銀本位制改編에 대하여 日·清과 동일한 보조를 취하였다. 英國이 朝鮮의 關稅徵收를 日本銀貨로 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하나의例外에 지나지 않는다. 英國은 東아시아의 國際通貨制度를 銀貨本位制로 改編하는 것이야말로 英國의 金本位制를 유지시켜 주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였다. 또 日本과 清國은 朝鮮을 銅錢制에서 銀本位制로 유지시켜 주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였다. 또 日本과 清國은 朝鮮을 銅錢制에서 銀本位制로 改編시켜 自國의 力量에 포섭하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발상에서 朝鮮의 銀

12) 通商彙纂, 第156號, 1900年 1月, p. 42.

貨本位制는 銀貨圈擴大라는 점에서 日本과 清國의 共同利益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背景에서 조선의 銀貨圈擴大는 실현되었다. 이러한 은화권의 확대는 조선이 英國의 세력권으로 된 것도 아니었고, 清國의 세력권으로 된 것도 아니었고, 日本의 세력권으로 된 것도 아니었다. 세력권을 잡는 열쇠는 조선의 수입시장과 조선의 수출에 대하여 어느나라 상인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決定하는要因은 各國의 生產力發展段階와 조선에 대한 관심의 정도이었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한 英國에게는 인도와 中國에 비하여 조선은 관심밖이었다. 관심을 가진 자의 경쟁은 產業資本을 確立하지 못한 清國과 產業資本主義로 成長한 日本이 對朝鮮의 綿織物輸出과 金輸入을 中心으로 한 市場쟁탈의 경쟁이었다. 開港後期 朝鮮產 金輸出의 動向은 帝國主義의 視角에서 以上的 狀況을 分析의前提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2. 對朝鮮 銀貨「엔」流出政策과 日本銀行券의 朝鮮內流通

1897년 日本의 金本位制確立과 이에 관련된 일련의 조치는 東아시아의 國際通貨構造에 커다란 變化를 주었다.

日本은 金本位制를 確立함에 있어서 朝鮮의 條約港과 地方市場에流通시켜온 日本銀貨를 金貨로 태환시켜주는 조치가 必要하였다.當時에 流通되고 있던 日本銀貨는 約 400萬「엔」¹³⁾에 달하였는데, 이를 1897年 10月부터 1898年 7月까지 회수하였다. 「約 200萬엔의 日本銀貨는 日本으로 회수되었고 홍콩으로 向하는 약 50萬엔의 日本銀貨는 이 港口(釜山)로부터 輸出하였기 때문에 朝鮮에 머물고 있는 規模는 약 50萬엔 정도에 불과하였다.」¹⁴⁾

이러한 日本銀貨의 회수政策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日本의 帝國主義政策과 충돌하는 것이었다. 첫째, 회수자체는 日本의 금태환必要額의增加를 意味하는 것이다. 둘째, 開港以後 朝鮮의 租界 및 地方市場에서 그동안 구축하여 온 日本銀貨=日本通貨圈의 擴大政策에 어긋나는 것이다. 셋째, 日本銀貨를 기반으로 하는 朝鮮內의 日本第1銀行의 支店들은 그活動을 制限받게 되었다.

以上과 같은 問題點때문에 日本 第1銀行 총재 濵澤英一은 日本의 金本位制確立 2個月前에 1897年 8月 日本銀行(日本中央銀行)에 보내는 「朝鮮貨幣制度에 관한 私見」 속에서 다음과 같이 建議하고 있다. 「一定한 刻印을 찍고 당분간 이 刻印된 銀

13) 崔柳吉, 「日本에 있어서의 金本位制成立과 李氏 朝鮮」, 『社會經濟史學』 第36卷 6號 p. 10 참조.

14) 通商彙纂, 156호, 1900년 1월, p. 42 참조.

貨를 朝鮮의 貿易市場에 充當하는 措置^[15]가 必要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日本銀貨를 朝鮮에서 使用함으로써 日本銀貨가 朝鮮으로부터 日本으로 還流하는 것을 막고, 日本에 회수된 日本銀貨를 다시 刻印하여 朝鮮에 流出함으로써 金貨와 대환할 수 있는 日本銀貨를 效率的으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建議는 같은 時期에 日本이 대만에서 實施한 政策을 朝鮮에서도 施行함으로써 日本의 金本位制의 移行을 원활하게 하고 朝鮮에서 第1銀行이 계속 세력을 유지하게 함이었다.

그러나 當初에 5년동안 실시할 예정이었던 金과 銀의 대환은 단축되어 1898年 7月에 終結되었고 朝鮮의 貨幣制度는 따라서 日本銀貨와 刻印된 日本銀貨와 함께 流通되게 되었다.

한편 東아시아 특히 朝鮮을 둘러싼 帝國主義列強의 競爭의 격화는 日本銀貨의 朝鮮流通을 저지하는 方向으로 움직였다. 朝鮮政府의 財政顧問으로 취임한 알렉세이프는 1897年 以後 러시아의 영향력이 擴大됨에 따라 朝鮮政府로 하여금 日本銀貨 배제정책을 展開하게 하였다. 1898年 2月 露韓銀行의 設立을 위한 제일은행과의 對抗, 1901年의 貨幣條例의 公布→日本銀貨의 排際라는 일련의 움직임은 그 政策的 表現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의 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即, 「金貨와 交換되기 위하여 刻印되지 않은 銀貨는 韓國의 流通額으로부터 반이상을 減少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刻印된 銀貨는 알렉세이프의 방해에 의하여 최초의 계획대로 大規模로 輸入되지 않음으로써 韓國에 있어서의 流通額은 철저히 감소되었다.」^[16]

그러나, 1900年의 의화단사건은 日本의 中國侵路을 수반하였으며 상해의 銀貨時勢를 등枢시켰다. 이 결과 조선의 일본은화가 中國으로 流出되었다.^[17]

이러한 日本銀貨의 中國流出은 러시아의 日本銀貨流通저지정책과 一致하는 현상으로서 조선에서의 日本銀貨는 그 流通量이 격감되었다. 日本은 이러한 現狀를 克服하기 위하여 일본銀貨가 形成하고 있었던 信用기반위에 제일은행권의 발행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日本은 금본위제 확립후 조선을 은화제도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실패하고 1900년 의화단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은화가 중국에 대량 유출되었다. 그리하여 日本은 對朝鮮貿易의 擴大와 일본경제권의 확장, 商圈의 内륙으로의 침투에 수반하여 銀貨「엔」에 대체하는 새로운 通貨가 필요하였다. 이 시기에 친로파 이용익에 의하여 1901

15) 崔柳吉, 「日本에 있어서 金本位制成立과 李氏朝鮮」『社會經濟史學』第36卷 6號. p. 10 참조.

16) 通商彙纂, 155호 1899년 12월 p. 13 참조.

17) 앞의 책 198호 1901년 9월 p. 68 참조.

년 화폐조례가 공포되고 朝鮮이 金本位制로 움직임을 보였다. 刻印된 銀貨「엔」의 유통처지의 방향으로 치닫는 단계에서는 銀貨「엔」에 대체하는 새로운 통화의 등장이 야말로 조선의 金本位制 이행을 저지하고 일본경제권의 확장을 보증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1900년초 조선판화 유통상황을 볼 때 조선정부의 백동화남발정책의 결과 조선의 행정명령이 비교적 잘 실시되어온 中部地方을 중심으로 백동화가 유통되었고 그 외의 동북부와 남부에서는 엽전이 유통하였다. 그리고 부산, 인천, 서울, 원산과 내륙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일본태환권과 銀貨「엔」(유통량은 적지만)이 유통하였다. 또 러시아와의 접경지대에서는 러시아 지폐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는 馬蹄銀이 유통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일본이 기회를 이용할 여지는 충분하였다 것이다. 일본태환권이 銀貨「엔」대신에 신용을 획득하였고 지폐의 신용이 오히려 銀貨「엔」보다 두터웠고¹⁸⁾ 지폐들은 최근에는 한국사람도 즐겨 사용하여 저장의 편리성을 느끼는 것 같았다.¹⁹⁾ 이러한 상황은 銀貨「엔」에 대신하는 새로운 통화의 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金本位制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조선에 대하여 일본은 선수를 써서 종래의 해관세의 은기준을 금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영국에게 승인받고 1902年 1月 이후 이를 실시하였고 다시 일본통화와의 태환을 전제로 1902년 5月에 제일은행권 발행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러시아와 조선정부내의 친러파의 반대는 필연적이었다. 1905년 1月 제일은행권을 법화로 하는 것이 승인되기까지 조선정부의 유통저지라는 저항투쟁이 계속되게 된다.

3. 金分析所 設置의 意味와 效果

日帝는 1900年代에 들어가면서 朝鮮에서의 清商의 市場支配의 기반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日本資本主義의 要求에 따라 朝鮮을 支配하기 위하여 朝鮮產 金 買入市場에 대한 새로운 政策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金 分析所 設置의 過程과 內容을 살

<表·8>

第一銀行券 發行額 累年表

단위 : 천엔

銀行券 年數	1円券	5円券	10円券	10錢券	20錢券	50錢券	年 計
1902	300	500	500	—	—	—	1,200
1903	—	500	500	—	—	—	1,000
1904	500	1,200	1,000	200	300	500	3,700
1905	1,800	4,050	6,500	930	210	3,000	16,490

備考 : 「韓國에 있어서의 第一銀行」 및 四方博「朝鮮에 있어서의 近代資本主義의 成立과정」 104面,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論文集 1933年刊。

18) 通商纂彙 156호 1900년 1월 p. 42 참조.

19) 같은 책 194호 1901년 7월 p. 63 참조.

되고 效果를 分析해 봄으로써 分析所 設置가 이와같은 意味를 갖는다는 것을 確認 할 수 있다.

日本 第1銀行은 1900年 5月 金塊 買入規模를 擴大하기 위하여 「朝鮮國 京城 金鑄分析所 設置に 關する覺書」를 大藏省에 제출하였다.²⁰⁾ 그 特徵的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分析所의 設置와 關聯하여 日本銀行 造幣局 朝鮮支局의 전물을 연와조로 짓는다.

둘째, 分析所에서 사용하는 기계 기구는 모두 造幣支局에서 조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셋째, 分析所의 속련기사 및 직공은 造幣局에서 파견한다.

네째, 分析所 設置費用과 기술자의 紙料 및 分析所에 관한 經費는 모두 第1銀 行이 부담한다.

다섯째, 分析所는 造幣局의 監督을 받는다. 수납된 金塊와 銀塊는 모두 造幣規 則 및 金銀地金精製 및 品位證明規則에 따르고 나머지 수수료 등은 일체 징수하지 않으며 大阪까지의 運賃 및 保險料는 金塊 受納人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여섯째, 金塊판매자에 커다란 優리를 주어 1個年에 대개 500貫의 金塊를 取入 할 수 있다.

일곱째, 이상의 매입규모 전망을 위해 金塊買入資金으로 一金 50萬엔을 무담보 무이자로 日本銀行으로부터 대부받는다.

여덟째, 이 매입자금은 매월 分析所에서 매입한 金塊를 大阪造幣局으로 輸送하고 輸送費로서 되돌려 주게 되고, 이 되돌려 돌아온 매입자금은 다시 分析所에 貸付된다. 단, 分析所로부터 輸送한 金塊에 限해서 造幣局은 分析表에 의거하여 成貨拂渡 證書를 交付한다.

第1銀行 京城分析所는 1900年 11月 地金取扱規則을 發表하였는데, 이 規則의 內容을 통하여 性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첫째, 이것은 金地金의 品位檢査에 관한 것이다.

둘째, 金 또는 銀의 地金을 지참하고 팔 것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 地金은 신 청자의 立會下에 이를 저울에 달아서 當所에서 맡아두고 보관증을 교부한다.

셋째, 地金의 品位와 價格은 分析을 기초로 決定하는데 100匁以上의 地金은 分析하지 않고 價格을 결정한다.

20) 日本의 第1銀行編, 「韓國に於ける第1銀行」, 明治 41年 8月刊, pp.376~382. 第10章 韓國產 金銀の受納 第2節 分析所の 設置 参照。

21) 자세한 것은 濵澤英一傳記資料 第16卷 p.89를 참조할 것.

넷째, 分析期間은 1주일 이내로 하여 分析結果에 대한 勘定書를 作成하여 판매자에게 교부한다.

다섯째, 販賣者는 分析所로부터 교부받은 勘定書에 異議가 없을 때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대금지불을 청구한다. 異議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異議書를 제출하여 3일을 넘으면 承諾된 것으로 간주한다.

여섯째, 異議書를 받은 分析所는 品位検査表를 교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지금을 뒤돌려 준다. 수수료는 金塊에 3圓, 銀塊에 2圓 70錢이다.

일곱째, 分析所는 受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價格을 決定하여 代金을 지불한다.

여덟째, 分析所가 受付한 地金은 分析을 위해서 使用된 金量은 販賣者가 부담한다.

以上의 事實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金市場의 特徵을 抽出할 수 있다. 첫째, 한국에는 1900年부터 公개적인 大規模 金市場이 形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 金市場은 日本中央銀行이 監督하는 第1銀行의 京城出張所內의 京城分析所라는 金市場이다. 셋째, 이 金市場은 需要者獨占의 金市場이다. 넷째, 이 金市場은 金의 매매과정이 일방적이다. 즉, 金販賣者는 주로 朝鮮人 및 清商 그리고 日商으로構成된다고 보이며 買入者は 分析所 하나 뿐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이다. 다섯째, 100匁이상의 規模가 去來單位로 되어 있으므로 去來對象은 주로 鎌山勞動者나 農民을 除外한 商人資本家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規模는 당시의 속련기술노동자의 1년 이상~2년 가까운 월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 金市場은 午前에만 서는 金市場이다. 일곱째, 이 金市場의 買入者は 日本中央銀行인 日本銀行으로부터 無擔保·無利子의 50萬엔의 대부를 받아 움직이는 金市場이므로 다른 外國商人資本이 競爭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같은 大規模 自由金市場은 擴大되기 시작하였다. 즉 1904年 10月 평양분석소가 설치되고 1906年 10月 元山分析所가 設置되어 運營됨으로써 日本中央銀行의 監督에 의하여 움직이는 朝鮮內 市場의 規模는 擴大되었다. 또 元山의 경우 金分析所가 設置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京城의 金分析所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의 金融支援과 運賃節減支援을 하였다.

分析所 設置의 效果는 어떠하였는가?

첫째로 京城分析所의 金買入이 <表·9>에서 보는 바와 같이 仁川의 金輸出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分析所 設置 이후 美國資本의 雲山金鑛과 英國資本의 殷山金鑛에서 生產된 金塊가 비로소 日本으로 吸收되기 시작하였다.

〈表·9〉 서울 제일은행지점 공개금시장의 금매입추이

年度	地 金 量	純 金 量	純 銀 量	代 金	摘 要
1900	2,450	60	1,859	65	10月부터 試驗的 營業을 하였기 때문에 매입량이 매우 적다.
1901	400,705	30	310,273	83	상반기는 同順泰 등의 清商 손에 매입되었기 때문에 매입량이 적었음.
1902	536,114	40	410,304	91	清商의 매입이 정지되고 작년도 흉작때문에 금의 생산과 출하가 많아졌기 때문임
1903	436,974	60	337,257	50	작년도(1902)년 豊作으로 인하여 금의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였기 때문
1904	317,576	60	254,001	86	1904年 10月까지의 통계임.

資料：韓國礦業調查報告書 경상도, 전라도편, 1906年, p. 106.

셋째, 分析所設置 이후 金需要競爭이 치열한 元山과 京城=仁川에서 清商이 敗北하고 没落하기 시작하였다. (〈表·10〉 참조) 이것은 清商의 輸入貿易이 日商의 輸入貿易과의 競爭에서 중요한 무기 하나를 빼았기고 혼들리기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分析所設置가 이상과 같은 效果를 갖게 된 가장 중요한 理由의 하나는 無利子·無擔保의 50萬엔의 대부이며 日本으로의 金輸送費를 節減하여 준 조치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 100匁當 부대비용 5~10엔을 절감시켜 주는 效果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日本銀行資本의 金市場介入 즉 分析所의 設置는 日本帝國主義

〈表·10〉 仁川港의 國別輸出 단위: 엔, %

年 度	金 輸 出	對 清 輸 出	對 日 輸 出
1897	976,970	100%	777,320 79.6%
1898	1,258,638	100	847,617 67.3
1899	1,789,080	100	659,367 36.9
1900	1,926,915	100	454,965 23.6
1901	2,556,095	100	119,400 4.7
1902	2,538,101	100	53,300 2.1
1903	2,128,704	100	— —
1904	2,094,450	100	3,000 0.1

資料：通商회찬, 臨時增刊號 改第 44號, pp. 100~102.

가 朝鮮의 生產資本을 掌握하지 못한 狀態下에서 朝鮮의 金市場의 支配權을 掌握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日帝 金吸收政策의 意味와 그 成功要因

日本은 金本位制確立과 併行하여 한편에서는 日本銀貨流出政策을 展開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朝鮮產金吸收政策을 展開하였다. 金吸收政策의 핵심은 清國의 對朝鮮貿易出超(朝鮮의 對清貿易逆調)→朝鮮產金의 中國에로의 流出이라는 메카니즘을 저지하여 日本에 의한 朝鮮產金의 獨占的吸收를 노린 것이었다.

종래의 在朝鮮中國貿易商이 金을 購入하는 것은 對清貿易의 대폭적인 輸出超過로 인하여 발생하는 貿易決濟때문이었다. 當時의 對清貿易은 外換制度가 未發達하였기 때문에 上海와의 貿易決濟는 銀現送·金現送이一般的 現狀이었다.

따라서 中國에로의 朝鮮產金流出을 阻止한다는 것은 단순히 日本이 朝鮮產金을 獨占輸入한다는 것을 意味할 뿐만 아니라 朝鮮의 輸入市場을 日本產業資本이 장악함으로써 朝鮮에서의 中國貿易商의 役割을 排除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朝鮮輸入市場에 있어서 中國貿易商이 갖는 우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日本의 產業資本은 조선市場에 보다 깊이 파고들어가는 것, 즉, 朝鮮에서의 自生的經濟發展의 길을 파괴하는 것이 必要하였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 日本의 獨占的金吸收方法은 中國貿易商으로부터 市場時勢보다 비싼값으로 金을 買入하고 그 代價로 中國貿易商과 中國本土와의 代金決濟는 日本을 경유케 하여, 요코하마·고오베·나가사키와 上海사이에 換決濟를 행하는 機構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메카니즘이 形成되면 조선에 있는 어떠한 나라의 貿易商도 日本銀行 朝鮮支店에게 金을 매각할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形成하기 위하여 日本은 日本銀行 조선지점에 대한 資金지원, 속련된 金감정사를 파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措置를 기초로 日本이 朝鮮產金을 獨占輸入하게 되면, 中國貿易商은 日本의 원조없이는 中國으로부터 오는 換을 決濟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朝鮮이라는 輸入市場에 대하여 관心得이 감퇴될 것이며 그 결과 朝鮮市場은 日本產業資本의 獨占으로 될 것이다. 결국 金吸收政策이 이와 같은 性格을 갖는다면 이것은 日本의 金本位制維持에 必要한 것일 뿐만 아니라, 朝鮮市場을 장악하기 위한 必要條件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같이 開港後期 朝鮮產金의 中國에로의 流出은 격감하였고 朝鮮產金의 대부분은 日本으로 獨占的으로 輸出되었다. 즉 日本의 金吸收政策은 성공

한 것이다. 成功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清의 對朝鮮輸出이 경제하고 日本의 對朝鮮輸出이 급격히 增大하였다는데 있다(<表·11> 참조). 그原因是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日本의 金吸收政策의 성공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朝鮮의 主要輸入商品인 Sheet-tint과 生金巾등의 英國製 면직물이 清商이 취급하는 商品으로서 日本製 면직물과의 경쟁에서 品質面에서 타월하여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開港後期 輸入商品構造를 보면 방적사, Sheet-tint, 日本木綿, 晒金巾 等의 輸入이 크게 增加하였는데 이들 수입은 晒金巾를 除外하면 日本이 장악하게 된 것이었다. 특히 日本 紡績糸의 對朝鮮輸出이 급격히 증대한 것은 輸入商品構造의 새로운 變化이었고 輸出증대의 성공요인의 하나이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理由때문이다. 즉 朝鮮農民의 手織木綿이 세로로는 日本紡績糸를 쓰고 가로로는 朝鮮農民의 手紡糸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²²⁾ 조선농민의 농촌 수공업이 이와 같이 변한原因是 무엇일까? 그것은 조선의 對日 콩輸出이 增大한結果 農民의 콩生産을 增加시킴으로써 農民의 면화생산을 감소시켜 紡績糸의 販路가 해마다 크게 擴張되어 왔다는 것이 하나의 要因으로 지적되며²³⁾ 또, 日本에서 生產되고 있던 機械紡績糸가 한국 농민의 綿糸에 비하여 편리하고 저렴하였다는 것이 또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²⁴⁾

한편, 기계방적사로 짠 Sheet-tint도 조선에서의 영국면직물(淸商의 주요취급品目)의 市場占有率을 크게 잠식하고 있었다. 또한 日本木綿의 수출이 크게 증대한 원인으로는 조선시장으로 日本製品을 輸出하고자 하는 日本產業資本의 적극적 努力, 예컨데 조선농민의 수공업제품인 면포의 모조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점 그리고 이 모조품을 조선에 파는데 성공한 점등이 그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²⁵⁾ 그리하여 이러한 면제품 수입의 상당한 增加는, 조선의 南部地方, 즉 전라도와 경상도의 한국산 목면과 정면으로 대항하기에 이르렀다.²⁶⁾ 이러한 對立의 결과는 조선농민의 면포생산이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점은 가지무라교수에 의해 실증된 바 있다.²⁷⁾ 조선의 면직물 시장에 있어서 일본수출의 이와같은 성공은 동시에 중국무역상에 대한 대타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중국상인은 점차

22) 通商彙纂, 198호, 1901년 9월, p.61 참조.

23) 같은 책, 같은 면 참조.

24) 같은 책, 199호 1901년 9월, p.42 참조.

25) 通商彙纂; British Diplomatic and consular Report; 澤村東平, 李朝末期 編製品輸入の 社會經濟的 條件, 『社會經濟史學』第19卷, 2·3號, 1953年 10月 p.76 참조.

26) 通商彙纂, 제128호, 1895년 10월, p.1 참조.

27) 梶村秀樹, “李朝末期の綿業の流通と生産構造”(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 1977) 참조.

조선시장에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日本의 對朝鮮輸出의 成功을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한 要因은, 朝鮮에 있어서의 鐵道건설이었다. 1905년 1月 경부선이 건설되고, 同年 5月 마산선이 건설되고, 1906년 3월 경의선이 개통되었다. 이들은 軍事的 效果뿐만이 아니라 輸入商品의 수송망을 再編成하는 效果를 가졌다. 京釜線 鐵道는 韓國의 物產이 가장 풍부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횡단함으로써 수출상품의 集散의 역할을 하였다. 철도가 지방시장의 物產을 海運으로부터 흡수하는 것은 容易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鐵道수송이 하천보다도 단기간에 보다 저렴하게 이루어져야만 可能하기 때문이다. 鐵道수송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겨울철의 추위로 인하여 하천수송

〈表·11〉

開港後期 國別 輸入추세

단위 : 천엔

年別	國別	日 本	清 國	露 西 亞	其 他	合 計
1894		3,647	2,065	120		5,832
1895		5,839	2,120	130		8,088
1896		4,294	2,159	78		6,531
1897		6,432	3,536	100		10,067
1898		6,777	4,929	111		11,817
1899		6,658	3,471	98		10,227
1900		8,241	2,582	117		10,940
1901		9,052	5,618	27		14,696
1902		8,689	4,832	20		13,541
1903		11,555	5,359	127	1,178	18,219
1904		19,007	5,053	89	2,656	26,805
1905		23,592	5,945	102	2,351	31,960

國別 輸入 構成比

1894	62.5	35.4	2.1		100.0
1895	72.2	26.2	1.6		100.0
1896	65.8	33.0	1.2		100.0
1897	63.9	35.1	1.0		100.0
1898	57.4	41.7	0.9		100.0
1899	65.1	33.9	1.0		100.0
1900	75.3	23.6	1.1		100.0
1901	61.6	38.2	0.2		100.0
1902	64.2	35.7	0.1		100.0
1903	63.4	29.4	0.7	6.5	100.0
1904	70.9	18.9	0.3	9.9	100.0
1905	73.7	18.6	0.3	7.4	100.0

자료: 「第3次 統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6年」; 韓國貿易協會, 「韓國貿易史」1972年 서울, 135면.

이 어렵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운임정책을 변경하였다. 즉 京釜線에 있어서 장거리운임체계법은 對日輸出商品의 수송비가 절감되고 수송기일이 단축되었으며 일본상인의 조선地方市場에의 진출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일본의 商圈은 地方市場에 까지 급격하게 擴大되었다. 이제 鐵道는 朝鮮의 地方市場을 日本經濟圈의 일환으로 재편성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최대의 피해를 받은 곳은 중국무역상의 활동거점인 仁川이었다. 중개무역항 인천은 진남포와 목포에 상권을 잡식당하였으며 1905년 6월 경인철도에 한하여 대화물 취급을 폐지한 결과 서울로부터 인천에로의 물자의 흐름은 감소하였다.

28)

세째, 金分析所의 設置를 들 수 있다. 分析所의 意義는 종래 감정의 어려움이 있어 銀行業者가 金塊의 買入을 직접하는 것이 거의 不可能하다는 상황을 극복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검토한 것처럼 金買入을 위한 日本銀行의 第1銀行에 대한 低利 또는 無利子의 응자, 金수송 운임절감정책은 日本의 金吸收政策을 성공시키는 직접적 要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日本금융기관은 자금을 買入하는 동시에 조선회내의 금광인 운산금광의 金을 흡수하는 데도 성공하였으며 조선산 金의 거의 전액을 獨占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1902년부터 1908년까지의 조선으로부터의 日本에로의 금수출증대는 종래 중국으로 유출하던 금이 日本으로 흡수된 결과이며 조선산 금수출 자체가 격증한데 기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 금생산과정 자체의 지배를 日本이 장악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수출량 자체의 증가는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고 日本이 조선의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자. 1906년 광업법과 사금채취법을 제정하고 생산과정 자체에 대한 규제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중국무역상은 조선에서의 금매입 경쟁에서 실패하는 결과로 되었다. 對朝鮮輸出에 대한 代價로 金을 매입함으로써 대조선 무역 출초를 해결하여온 중국상인은 그 길이 막히자 크게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그 실정을 잘 이야기하여 준다. 「清商은 열심히 당국(韓國)의 사금 및 금괴매입을 하여 전후 3년까지는 그 대부분이 清國으로 수출되었지만 최근 당항(仁川)의 제일은행등에 있어서 자금운전 및 운송비용상의 편리한 방법을 실시하여 金買入에 힘쓴 결과 日本으로 수출되게 된 것이 多額에 이르렀고 清商에 곤란을 주었다.」²⁹⁾ 이러한 곤란이야말로 중국무역상인이 對조선수출 代價로 얻는 金이 부족하게 된 것이며 여기서부터 중국의 대조선수출의 감퇴가 온 것이다. 또한

28) 仁川府편, 仁川府史, 1933年 p.898 참조.

29) 通商彙纂 198호, 1901년 9月 p.49 참조.

조선내에서 日本은행권의 유통은 日本의 조선시장지배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日帝의 金吸收政策의 成功事例

——元山의 경우를 中心으로——

日帝의 金吸收政策의 成功을 가늠하는 열쇠는 그 政策이 그 主要한 金輸出港인 元山과 仁川에서 成功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仁川에 있어서는 면직물수입과 관련하여 清商이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輸入商品의 競爭에서 이기는 問題와 관련되어 있고 또 절대적 金輸出比重을 갖는 美國人經營의 雲山金鑛과 英國人經營의 殷山金鑛의 金을 어떻게 吸收하느냐에 달려 있는 問題이다. 따라서 단순히 金吸收政策으로만 成功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第2의 大規模 金輸出港인 元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砂金生產은 수많은 朝鮮人の 德大經營에 의지하고 있으며 清商의 면직물시장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日本의 金吸收政策의 役割이 다른 어떤 要因보다 重要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日帝의 金吸收政策의 内容과 效果를 보다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在元山의 日本貿易商이 金을 日本에 輸出하는데 決濟上 換어음을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元山의 對日金輸出의 實態는 日本銀行의 元山支店이 다루고 있는 金塊換어음을 去來高로도 파악할 수 있다.³⁰⁾

아래 表는 金塊어음去來高이다.

開港後期 元山의 金輸出은 日本商人과 清商에 의하여 전개되었는데, 특히 日本에의 輸出이 현저히 증가하여 清商을 물리치고 元山의 金輸出을 日本商人이 장악하여 버리고 따라서 對日輸出體制로 굳어져 버린다. 그原因是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1898年 以來 日本은 한국에서의 金買入 장려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즉 日本郵船會社는 海上運賃率을 割引하도록 하였으며 또 金買入과 관련하여 銀行金利를 引下하도록 하였으며 또 大阪造幣局에 金塊를 납부하고 代金을 받기까지 보통 종래에는 약 24~25日이 걸렸는데 이제는 14~25日로 단축되어 10日정도의 利子支拂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¹⁾

이러한 支援政策의 결과 종래의 金 100匁輸出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10엔정도이

30) 在元山日本領事館報告, 1904年 1月 21日字 參照.

31) 在元山 日本領事館報告, 1904年 1月 21日字 參照.

〈表・12〉 日本銀行 元山支店의 金塊換어 음去來高推移

	金塊換어 음去來額		去來指數	對日輸出實額		清商의	對清輸出
1898	565,411	62.6%	42.2	582,898	63.3%	338,320	37.4%
				567,112	62.6		
1899	755,565	75.0	56.4	778,932	75.6	251,675	24.9
				757,839	75.1		
1900	913,147	83.6	68.2	941,389	84.0	179,610	16.4
				915,895	83.6		
1901	1,175,080	99.7	87.7	1,211,423	99.7	3,740	0.003
				1,178,616	99.7		
1902	987,640	99.3	73.7	1,007,796	99.4	6,505	0.007
				989,619	99.3		
1903	1,339,410		100.0	1,366,745	100.0	—	—
				1,342,094	100.0		

자료：在元山 日本領事館報告，1904年 1月 21日字

註 1) 銀行의 어음去來額은 金輸出額(實額)보다는 3步(1898~1901까지) 또는 2步(1902~1903년의 시세)를 공제한 수치이다.

2) 清商은 모두 銀行의 換어음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上海로 輸送하는 데 상세한 것은 본래 이를 알 수 없지만 이 조사는 日本郵船會社 元山支店 등의 運輸去來商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휴대하여 가지고 가는 것을 제외하면 누락이 없는 것 같다고 한다.

었는데 이제는 4~5엔 정도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898年 이전에는 元山의 金輸出의 大部分을 清商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日本商이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金收集에 노력하게 되자 清商은 도저히 경쟁하지 못하고 마침내 金買入의 獨占的 위치가 바뀌어 日本商人의 獨占으로 돌아가게 되었다.³²⁾

둘째, 金買入을 專業으로 하는 商人資本이 存在한다는 點도 日本商人의 金輸出 獨占을 가져온 또 하나의 原因으로 생각된다. 元山에서 金買入에 從事하는 日本商人은 佐藤直太郎, 岩田梅之助, 川畑新太郎, 寺本幸太郎 등의 6名인데 이 가운데 川畑氏와 寺本氏는 거의 金買入을 專業으로 하는 商人資本이라고 한다.³³⁾

세째, 1903 年 金輸出이 크게 증가한 것은 1903年이 兇作이어서 대규모의 곡물 매입이 필요하였는데 이 곡물매입을 위한 구매력을 마련하는 輸出商品으로서 金이 活潑하게 수출되었다는 것이다.³⁴⁾

32) 在元山 日本領事館報告, 1904年 1月 21日字 參조.

33) 在元山 日本領事館報告, 1904年 1月 21日字 參조.

34) 같은 책 같은 면 참조.

第4節 新로운 鎳業政策 : 砂金開採條例의 成立

1. 砂金開採條例以前의 鎳業政策

(1) 開港以前의 鎳業政策

17世紀부터 19世紀末 開港에 이르기까지의 鎳業政策은 設店收稅政策을 通하여 불철저하게 나마 民營鎳業의 成長을 허가하는 政策으로부터 점점 統制를 強化하는 經稟設店政策이 特徵을 이루고 있었다.³⁵⁾

이와 같은 民營鎳業의 營業에 對한 強力한 封建政策에도 불구하고 對清貿易에 따른 金需要의 市場的 基盤의 成長을 기반으로 부패한 官僚와 결탁한 特權的 商人에 의한 物主制 德大經營이 潛採의 形式으로 광범하게 成長하고 있었다.³⁶⁾

(2) 開港直後 經稟設店政策의 완화

開港은 對清貿易에 따른 金需要의 增大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급속히 金需要의 增大라는 충격을 金鎳業에 주었다. 뿐만 아니라 外國資本이 韓國의 金鎳開發에 적극적 관심을 보임에 따라, 더 나아가서 帝國主義列強의 侵略危脅에 직면하여 부패한 執權層은 1882年을 전후한 시기부터 閔氏一派의 守舊派를 中心으로 東道西器的 政策轉換을 試圖하며 그 일환으로 종래의 經稟設店政策을 완화하고 金鎳開發에 政府가介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1883年부터 1885年間에 있어서는 外國人技術者의 鎳山調查를 허락한다. 그리고 政府가 金鎳開發에着手하게 되는 것은 자료상으로는 1885年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1876年부터 1885年間에 金鎳業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항전에 비하여 급격한 金需要의 增大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潛採型 物主制 德大經營이 광범하게 發展하지 않고서 이러한 金輸出이 이루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政府는 1885年 1月 慶州 義城等 3個處에 金鎳에 開鎳하기 위하여 差使를 내려 보내고 이를 營衙門에 시달하고 있다.³⁷⁾ 한편 政府는 1885年 平安道地方의 朔州, 碧潼등지에 鎳苗가 많다하여 司勇(李健營)을 내려보내 관리케 하였다.³⁸⁾ 咸鏡道地方

35) 자세한 것은 柳承宙의 「朝鮮後期 鎳業政策」『民族文化研究』第9號(高大, 1975. 12)를 참조할 것.

36) 林炳勲, 「朝鮮後期 鎳業經營의 發展—金銀鎳業을 中心으로—」韓國史研究 32輯, 1981, pp. 103~147에서 자세한 것을 참조할 것.

37) 統記 第5冊 高宗 22年 1月 16日條를 참조, 또는 韓沽勛,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 pp. 289~290 참조.

38) 統記 第5冊 高宗 22年 1月 30日條를 참조, 또는 韓沽勛,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 pp. 289~290 참조.

에서는 咸鏡監司가 1885年 北青府使 李容翊으로 하여금 端川金鑛을 관리케 하는 동시에 이 地域의 私採를 금지시키고 永興鑛務도 아울러 管理케 하였다.³⁹⁾ 江原道地方에서는 1885年 3月 8日 原州와 平康縣의 開鑛에 對하여 前郡守 池弘寬을 監官으로 뽑아 그곳의 鑛務를 맡겼다.⁴⁰⁾ 또 慶尙道 馬山浦에서는 1885年 10月 10日 銅鑛을 開發하여 義信會社 經營者 方興完을 幹事로 뽑아 내려보냈다.⁴¹⁾ 黃海道 遂安金鑛은 1885年 4月 20일 別將 張致賢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고 다시同年 5月 15日 黃海道 開鑛監官을 뽑아 내려보냈다.⁴²⁾ 그리고 이들 金鑛經營을 地方의 경우 1885年 5月 稅金 30兩을 上送한 事例⁴³⁾로 보아 또 砂金採取에 대해 收稅코자 하였다는 史實⁴⁴⁾로 보아 광산관리의 허가로 경영되는 민영금광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設店收稅의 民營金鑛 이외에 私採도 광범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가장 生產量이 많은 金鑛인 永興鑛에는 私採한다는 說이 1885年 낭자하게 떠돌았다.⁴⁵⁾ 黃海道에서도 1885年 載寧鑛이 統理衙門관할임을 시달하는 한편 博川座首가 金店의 別將과 符同하여 國鑛이라고 假稱하고 泰川, 博川 외의 경계지에서 私採를 慢行하였고 政府는 이들을 잡아들여 嚴罰하는 한편 채굴된 金을 查納하도록 하였다.⁴⁶⁾

(3) 1887年 鑛務局設置와 私自設店의 一般化

政府는 1887年 12月 鑛務局을 開設하였다. 鑛務局은 咸鏡南道 鑛山의 경우 元山監理署의 稅銀中에서 開鑛經費를 支給하였다.⁴⁷⁾ 仁川, 釜山, 元山의 3港의 監理署에서 조달된 鑛務局經費는 1892年(壬辰)에 4,500元, 1893年 7,000元이었다.⁴⁸⁾

39) 統記 第5冊 高宗 22年 2月 23日條; 3月 13日床;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 pp. 289~290 참조.

40) 統記 第6冊 高宗 22年 4月 10日條를 참조, 또는 韓治勛,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 pp. 289~290 참조.

41) 統記 第6冊 高宗 22年 4月 10日條를 참조, 또는 韓治勛,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 pp. 289~290 참조.

42) 統記 第6冊 高宗 22年 4月 20日 및 5月 15日條를 참조, 또는 韓治勛,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 pp. 289~290 참조.

43) 統記 第6冊 高宗 22年 5月 2일條를 참조, 또는 韓治勛,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 pp. 289~290 참조.

44) 統記 第6冊 高宗 22年 5月 3일條 참조, 또는 韓治勛,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 pp. 289~290 참조.

45) 統記 第6冊 高宗 22年 5月 15일條를 참조, 또는 韓治勛,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 pp. 289~290 참조.

46) 統記 第6冊 高宗 22年 6月 13일條 참조, 또는 韓治勛,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 pp. 289~290 참조.

47) 統記 第13冊 高宗 24年 5月 13일條 및 6月 17일條 참조.

48) 統記 第37冊 高宗 30年 9月 17일條 참조.

〈表·13〉 清日戰爭이전의 무역과 무역수지(1885~1894) 단위: 파운드貨

	輸出(I)	輸入(II)	貿易收支(III)	III/I (%)	貿易規模(IV)
1885	88,221	290,727	△202,506	229.5	378,948
1886	84,036	413,282	△329,246	391.8	497,318
1887	134,166	469,240	△335,074	249.7	603,406
1888	137,283	482,392	△345,109	251.4	619,675
1889	185,076	506,672	△321,596	173.8	691,748
1890	591,746	790,261	△198,515	33.5	1,382,007
1891	561,057	876,078	△315,021	56.7	1,437,135
1892	366,560	693,417	△326,857	89.2	1,059,977
1893	316,072	437,595	△121,523	38.4	753,667
1894	345,614	584,318	△238,704	69.1	929,932

資料 : Great Britain, Diplomatic and Consular Reports on Trade and Finance : Korea 1882~1895

한편 1887年을 전후한 시기에 鎳業政策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1887年的總稅務司 Merril(黑賢理)의 다음과 같은 報告에서 確認할 수 있다.

「朝鮮에서 海外로 流出되는 金量은 合計하면 해마다 300萬兩(洋銀: 멕시코銀貨)에 달한다. 本國의 產金地는 종래 私自開採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國家에서는 이처럼 禁令을 설치해 둔데도 불구하고 地方에서는 계속 私採함을 면치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이 禁令을 大開하고 民間의 意思를 准聽하여 採取함을 승인하고 採金量의 多寡에 따라 百分中 數分의 稅를 징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金의 生產은 앞으로 輸出額이 증가될수록 더욱 많이 生產될 것이 틀림없다.」⁴⁹⁾ 이와 같이 經稟設店政策은 폐지되고 私自開採政策이 成立된 것이다.

2. 砂金開採條例의 成立과 性格

(1) 새로운 鎳業政策의 意義

우리는 앞에서 1887年 鎳務局設置를 전후하여 늘어나는 輸出需要를 기반으로 成長하는 潛採型 物主制 德大經營의 發展과 관련하여 完全한 營業自由의 원칙을 관철한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상당히 私自設店의 德大經營을 허락하는 政策이 실시되어 봉음을 보았다. 마침내 東學革命이 터지고 이를 수습하는 甲午改革을 단행하는 즈음에 이르러 農商工部長官에 爰吉藩이 任命되고 砂金開採條例라는 새로운 鎳業政策이 成立하게 되었다. 이것은 德大經營의 認可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개인경영의 영업자유의 원칙을 살려주는 새로운 鎳業政策이었다. 이 내용을 검

49) 「朝鮮通商 三關 貿易冊」 光緒 13年(1887年) 通商口岸貿易情形(出洋生金 仁川港條) 또는 柳承宙, 「李朝開港前後의 鎳業政策研究」 亞細亞研究 第55號 p.228 참조.

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1895年 5月 17日字 發布된 砂金開採條例(이하에서 「條例」라고 함)는 法制面에서 德大의 性格의 일부를 분명하게 설명하여 준다. 첫째, 砂金開採條例 2條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金礦의 礦脈所在에 대한 探查視察權과 開採權은 農商工部가 파견하는 礦業局長 技師 또는 主事が 갖는다는 것이다.⁵⁰⁾ 이는 당시의 韓國과 같은 集權的 封建國家에 있어서 金礦의 所有權과 開採權이 政府 또는 王室(封建國家이므로 政府財政과 王室財政이 未分離되어 있음)에 있으며 礦山局長 技師 또는 主事는 이들 權利의 代行者임을 설명하여 준다. 따라서 德大는 金礦의 所有者가 아님을 第 2條는 明示하여 준다.

둘째, 各 金礦經營에 대한 行政業務를 담당하는 임시관리를 另派員 또는 派員이라고 하는데 農商工部가 파견하며 이들의 基本的 業務는 收稅業務이며 이 條例는 收稅業務를 基本的 內容의 하나로 삼고 있다. 한편 派員을 감독하는 監理는 실제로는 함경도 1名, 평안도 1名, 황해도 1名, 그리고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경기도를 관리하는 監理 1名 모두 4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⁵¹⁾ 또 派員은 자기가 관할하는 地方에서 各 礦區를 관할하는 稅監(別將 또는 金礦委員이라고도 함)을 추천하여 임명토록 하고 稅監은 徵稅業務를 德大에게 分掌시킨다.⁵²⁾ 그러므로 이 條例에 의거하여 볼 때 德大는 收稅의 基本單位임을 발견한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德大는 金礦經營의 基本單位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金礦經營者를 말하는 것이다. 德大의 이러한 性格은 뒤에 다른 記錄에 의하여 더욱 분명하게 설명된다.

셋째, 條例 第24條에 의하면 他邑사람이 礦夫를 이끌고 와서 德大가 되고자 出願할 때에는 그 地方 土着住民이 信任하고 保證한 후에 開採를 許可한다는 것이다.⁵³⁾ 이렇게 볼 때 德大는 일반적으로 그 地方住民이 많으며 他地方住民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위와 같은 條文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 德大가 開採許可를 받는다는 것은 所有權代行者로부터 營業權을 獲得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따라서 德大가 납부하는 稅金은 所有權者에게 支拂하는 封建的 地代의 性格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이 條例는 德大가 稅金을 逋脫하고 도망하였을 때 그 保證人으로 하여금 補償하도록 規定하고 있다.⁵⁴⁾ 이는 德大가 保證人の 保證를 받을만큼 상당한 資

50) 國史編纂委員會, 高宗時代史, Ⅲ권, p.875 참조.

51) 韓國礦業調查報告書, 全羅道, 庆尚道等, 1906, p.99 참조.

52) 條例 第13條 참조. (高宗時代史 Ⅲ권, p.876)

53) 高宗時代史 Ⅲ권, p.878.

54) 條例 第40條. (高宗時代史 Ⅲ권, p.879)

產을 保有한 者이거나 商人 또는 브르조아지의 資本家的 뒷받침이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일곱째, 德大는 金礦經營者라는 점에서 볼 때, 生產技術에 상당한 知識을 保有한 者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의 法條文解석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이 砂金開採條例의 意義를 밝힐 수 있다.

광업부문에 資本主義發展이 진행됨에 따라 억제할 수 없는 광산의 개인경영을 封建政府는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95年の 砂金開採條例의 發布가 그것이다. 부패한 봉건정부는 이를 허락하여 稅收入을 증대시킴으로써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방편의 하나로 삼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法은 監理, 派員, 稅監(別將) 등의 광무담당관리는 덕대와의 관계, 덕대와 광업노동자와의 관계, 국가와 광업경영자(덕대)와 土地所有者와 農民 또는 農業生產者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條文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法은 최초의 근대적 광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덕대는 현물지대 또는 화폐지대의 형태로 鑛稅를 정부에 납부함으로써 金礦業의 資本主義的 經營(德大經營)을 法的으로 인정받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설사 이러한 해석을 내린다고 해서 이 당시의 社會經濟構成이 資本主義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權力의 性格에 있어서나 경제전반의 生産양식에 있어서나 資本主義의 生產議式은 사회의 性格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미시적으로 볼 때 즉 상품화폐경제발달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金礦業部門에 있어서 政策的 새로운 變化가 종래와는 현저한 差異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2) 砂金의 生產地와 矿業行政

① 金의 生產地

당시에는 金은 岩金과 砂金이 있는데, 岩金礦業은 外國資本에 의하여 經營되고 있었고 砂金礦業은 朝鮮人에 의하여 經營되고 있었다.

金의 生產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岩金의 生產地

광물의 분포는 전국 200여군데에 흩어져 매장되어 있다. 특히 金生產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0年代 初에 있어서 金生產地는 대략 126個가 있다고 한다. 年平均 生產量은 1천貫目 이상에 달하며 生產액은 400만엔 내지 450만엔에 달한다. 또 未開發礦山도 상당히 있어 장래에 있어서도 유망한 矿業은 金礦業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生產되는 金은 그 종류가 岩金과 砂金 두 가지이며 岩金은 평안도지방에 가장 풍부하게 배장되어 있는 것 같으며 그중에서도 운산金礦이 당시 제일 큰 金礦으로서 광맥이 매우 크고 年平均 생산액이 약 100만엔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큰 金礦山은 殷山金礦인데 年平均 생산액이 약 50만엔이다. 그밖에 昌城, 泰川등은 모두 굴지의 金礦으로서 內外國人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었다.

평안도 지방 다음으로는 함경도 지방이 특히 永興, 定平지방이 주요한 金산지로 개발되고 있었다. 이 지방의 金脈은 평안도에 비하여 크지는 않지만 품질이 매우 좋아서 含金量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부령, 회령등 많은 유망한 鎳地가 있다.⁵⁵⁾

세번째로 중요한 金生產地는 충청도이며 직산이 가장 유명하고 충주, 공주 주변 지방도 다소 생산된다.

네번째로 중요한 金生產地는 황해도인데, 수안, 송화, 장연, 풍천등이 유망한 생산지로 알려져 있고 특히 수안은 1900年代初 內外國人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여기서 生產되는 岩金은 함경도지방에 뭇지 않게 良質이라고 한다.

다섯째로 중요한 金生產地는 경상도의 전부와 전라도의 북부 및 강원도의 일정 지역인데 특히 강원도의 金城을 1位로 하고 경상도의 靑松, 昌原, 漆谷, 咸安, 安東 전라도의 金溝 등이 生產地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廣州와 安城이 金生產地로 알려져 있는데 앞에서 지적한 產地에 비하여 가장 적게 生產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에 있어서 당시의 金礦은 남부에 비하여 북부지방이 매우 풍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L. 砂金의 生產地

이제 砂金生產에 대하여 살펴 보자. 砂金은 한국의 광산물 가운데서 가장 많이 生產되는 생산물이며 따라서 그 생산지도 금광에 비하여 많고 연평균 황금의 생산액 450만엔 가운데 대략 300만엔이 砂金으로 되어 있다. 즉 60%정도를 차지한다.

사금생산의 分布를 보면 평안남·북도지방이 가장 많이 생산되어 砂金 총생산량 300만엔 가운데 약 150만엔(생산량으로는 약 400만엔 정도)에 달한다. 평안도의 주요한 砂金生產地로는 순안과 선천지방이 있는데 선천의 생산량은 70내지 80貫이고 순안의 생산량은 150 내지 160貫이다. 그밖에 영변, 태천, 삁주, 창성, 강계, 자산, 안주, 축천, 성천등이 5 내지 6貫으로부터 10貫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외에 약간의 砂金을 生產하는 곳도 상당히 많다.

둘째로 사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은 함경도 지방이다. 영흥, 정평, 단천등이 넓

55) 通商彙纂, 1904, 改第 43號, 鎳業, p. 2 참조.

고 풍부한 砂金生產地이며 그 생산액은 각각 약 10만엔부터 20 내지 30만엔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장진, 갑산, 삼수 및 부령, 회령, 무산등의 지방도 이와 비슷한 사금의 생산지이다.

세째,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금생산지는 충청도와 황해도인데 충청도의 직산과 천안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연평균 약 40만엔의 생산을 올리고 있고 연기, 정산, 보은, 청산, 황간등의 충청도지방과 송화, 장연, 풍천, 곡산, 수안등의 황해도 지방도 끌지의 좋은 사금생산지로 지적되고 있다.

네째, 다음으로 지적할 만한 砂金生產地는 경상도, 강원도의 일부지방인데 경상도의 청송, 의송지방은 품질이 가장 좋은 사금을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밖에 창원, 철원, 함안, 협천, 성주등의 경상도지방과 금성, 양구, 낭천, 홍천, 정선등의 강원도지방도 이에 끗지 않은 砂金生產地로 되고 있다.

끝으로 전라도와 경기도의 砂金生產地는 경기도의 안성, 축산과 전라도의 금구, 남원, 보성등으로써 약간의 砂金이 生산되고 있다.

要컨대 砂金은 岩金과 마찬가지로 북부지방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남부지방에서는 충청도가 눈에 띄인다.

② 鐵業行政의 二元的 發展

애초 條例가 發布될 때에는 砂金礦業行政은 一元的으로 농상공부관할이었다. 그러나 1895~1896年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朝鮮人的 金礦經營에 對한 政府의 管割行政은 二元化되었다.⁵⁶⁾ 즉 農南工部의 管割과 宮內府의 管割(王室 管割)이 그것이다. 이는 1895~1896年쯤부터 생긴 제도이다. 1895年 雲山金礦 채굴권이 美國人 Morse의 손에 넘어간 以後 外國人的 視線은 韓國의 鐵山에 집중되고 關心들은 오로지 이 鐵山業에 쏠리고 有利한 鐵山은 계속 外國人的 手中に 들어가는 상황으로 됨에 따라 韓國王室은 그 防禦政策으로 全國의 有望한 광산을 列舉하여 이를 宮內府의 管割로 옮기었다. 이것은 王室管理의 이름아래 이를 保存하고자 하는 것以外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됨에 따라 全國의 유망한 鐵山은 대개 궁내부의 所屬에 속하게 되었지만 外國人에 대한 방어는 이로써 절대적으로 不可侵의 것으로 될 수는 없었다. 1904年 現在 殷山과 금성등의 광산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宮內府의 所管에 속하는 鐵區라 하더라도 國際關係의 결과에 따른 外國人權利의 發展에 대하여 實力を 갖지 못한 韓國의 王室은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광산이 있게 되고 그리하여 그 광산의 權利는 점차 外國人에게 讓渡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56) 通商彙纂, 1904, 改第 43號, pp. 2~10 參조.

〈表·14〉

궁내부 관할에 속하는 광산

합경남도 : 갑산, 장진, 함흥, 영흥, 문천, 고원
 합경북도 : 부령, 단천, 길주, 경성
 평안남도 : 은산, 평양, 순안, 개천, 영원
 평안북도 : 상천, 의주, 창월, 영변
 황해도 : 송화, 장연, 수안, 재령
 경기도 : 안성, 통진
 강원도 : 금성, 춘천, 삼척, 홍천
 충청남도 : 직산, 공주, 문의
 충청북도 : 충주, 청주
 전라남도 : 없음
 전라북도 : 금구, 남원, 전주
 경상남도 : 창원, 진주, 원산
 경상북도 : 청송, 의성, 성주, 경주

자료 : 通商彙纂, 43號, 1904

註 : 여기서 殷山 및 금성의 두 鎳山은 이미 영국인과 독일인의 손에 넘어갔다.

여기서 注意해야 할 것은 궁내부의 관할에 속한 광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있어서는 그 광업은 政府 자신이 經營하지 아니하고 一般民營礦業에 맡겨 버리게 되면 이는 農商工部의 광산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政府民營礦業과 一般民營礦業의 差異點은 전자는 궁내부가 收稅權을 갖고, 후자는 農商工部가 收稅權을 갖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궁내부 관할의 광구는 42군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全國의 광산 331군에 12.7%를 차지한다.

1904年 現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鎳業行政의 宮內府集中化는 全國鎳山의 12.7%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鎳山의 數量에서 본 것이고 鎳山의 生產量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풍부한 광산이 대부분 북한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수출통계가 거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궁내부관할의 집중화는 생산면에서 거의 81%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짐작케 한다.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集中化되어 있는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규장각소장의 史料를 모아서 추적해 보면 〈表·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93年부터 급속히 전개된 것으로 보이며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이르면 대부분이 궁내부관할로 전환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表·15>

宮內府所管礦山의 集中化

	1898年(玄武2年) 4月 25日字(移屬)	1899年 2月 21日字 宮 内府移屬	1901年(光武 5年)6月 27日 字 内藏院 移 屬	1904年(光武 8年) 9月 26 日字	開採許可 받은 者 (1906.9 現在)
경기	通津(媒礦), 安城 (金礦)		陽城(金礦)	陰城(金礦)	獄 음
충북	忠州(金礦), 清州 (金礦)		陰城(金礦)	陰城(金礦)	公州: 派員 張正玉(1906. 4.10) 文義: 派員 崔永翰(1905. 9.4)
충남	公州(銀礦), 文義 (金礦), 穂山(金礦)		天安(金礦) 全義(金礦)		忠州: 派員 金浩成(1906. 1.22) 清州: 派員 任漢五(1905. 9.2) 稷山: 日本人 濱澤氏 金溝: 收租官 金弘憲 (1906.2.28)
전북	全州(金礦), 南原(金 鐵礦), 金溝(金礦)				
경북	慶州(煤鐵水), 鐵玉 礦), 星州(金礦鐵), 義城(金礦), 青松 (金礦)				星州: 派員 劉景夏 (1905.11.21) 義城: 派員 李聖敬 (1906.3.7)
경남	晋州(金煤礦), 蔚山 (煤鐵礦), 昌原(金 銅鐵礦)			陝川(金礦)	昌原(島土礦): 派員 金正泰(1906.7.6) 陹川: 派員 姜基珠(1906.4.8)
황해	長淵(金礦), 載寧(鐵 礦), 遂安(金鐵礦), 松木(金礦)	黃海道 全 地域	白川(金礦)		信川·載寧: 派員 趙東元 (1906.3.27: 20年 계약) 遂安金礦: 英國人 長淵殷栗: 派員 韓錫振 (1905.4.27), 各礦: 各礦 監理 朴來敷(1905.7.17)
평남	平壤(金煤礦), 介川 (鐵礦), 寧遠(玉礦), 殷山(金礦), 順安 (金礦)	平安道 全地域	順安(金礦)		平南: 各礦監理 趙東元 (1906.7.31) 平壤은 폐쇄 (1906.4.27)
평북	義州(金礦), 寧邊(金 鐵礦), 宣川(金礦), 厚昌(金銅礦)		昌城(金礦)		龜城泰川: 宮內府直營 雲山: 美國人
강원	春川(金礦), 三陟(煤 礦), 金城(金銀礦), 洪川(金鐵礦)		鐵原(鐵礦)		平北: 各礦監理 趙鼎允 (1906.5.22) 殷山: 國人 春川: 派員 韓基浩 (1906.3.5) 洪川: 派員 韓基浩 (1906.3.5) 金城: 獨일인: (채굴중)
咸남	端川(金銀銅), 鐵玉 礦), 永興(金銀煤鐵 礦), 甲山(金銀銅礦) 長津(金銀礦), 文川 (鐵煤礦), 高原(金 鐵煤礦)	咸鏡道 全地域			咸南北: 各礦監理 李桂健(1905.12.29) 咸興明太洞 永興 金城院·甲山 宮內府 直營
咸북	吉川(煤鐵玉礦), 鏡 城(燃鐵玉礦), 富寧 (金銅煤礦)				永興礦: 派員 韓貞奎 (1905.6.12) 鏡城煤礦: 郵船會社 丁致國(1906.5.11)
計	以上 43郡			以上 8郡	

資料: 奎章閣, 圖書番號 22053 經理院雜書類, 各礦區域案 및 經理院 矿產認可一覽表에서
작성.

③ 收稅政策과 그 性格

條例를 通해서 볼 때 鎳山管理를 위한 官吏의 任命過程과 收稅過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條例는 朝鮮人の 鎳業活動에 對한 政府의 鎳業政策의 立場을 설명하여 주기도 한다. 그것은 開港前 設店收稅의 民營開發方式의 연장일 뿐이며 殖產興業의 支援政策도 없으며 오직 封建地代에 해당하는 鎳稅의 收稅政策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 먼저 砂金開探條例의 特徵을 中心으로 朝鮮人の 砂金開發에 對한 政府의 收稅政策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農商工部가 파견하는 鎳山局長 및 技師 또는 主事는 각 鎳山에서 鎳脈所 在地에 대한 탐사시찰권과 開採權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탐사시찰할 때 農南工部가 파견하는 영파원은 광산국장과 협의하여 각광 산의 일을 처리 관리한다.

세째, 광구소재 地方守令은 鎳山局長의 鎳山開採를 沦害할 만한 措置를 취할 수 없다.

네째, 鎳山局長 및 技師 또는 主事が 歸京하였을 때에는 地方守令과의 交涉은 另派員이 맡아서 한다. 另派員은 광산개발에서 漏稅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調查·追徵·收稅할 수 있다.

다섯째, 另派員은 각 鎳山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 每月末 清算書를 갖추어 農商工部에 送付해야 한다.

여섯째, 각 鎳區에는 稅監 1名을 두어 德大에게 徵稅事務를 分掌시킨다. 단 稅監은 另派員의 추천에 의하여 이를 採用하고 만일 稅監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은 영파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세감은 매달 2회에 걸쳐 해당관할 德大가 이끄는 광부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 세감이 걷는 세금과 청산서를 另派員에게 보내야 한다. 영파원은 세금을 農商工部에 定期的으로 送付해야 한다.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는 영파원은 세감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저축하되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세금의 중량을 측정하는 도량형기는 農商工部가 선택하여 영파원에게 지급한다. 세감은 해당관할의 德大가 거느리는 鎳夫로부터 세금을 領收할 때 영수증을 發行한다. 또 마찬가지로 영파원은 세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영파원의 紙料 및 旅費 일체의 費用은 해당 광산의 세금청산서에 비추어 그 세액의 20분의 1에 상당하는 現物 또는 화폐로 지급한다.

일곱째, 德大는 그 地方 土着住民을 뽑아 旅費 기타 응용에 편리를 도모한다.

여덟째, 他邑 사람이 鎳夫를 이끌고 와 德大가 되고자 出願할 때에는 그 지방 토

착주민이 신임하고 保證한 후에 開探를 허가한다.

아홉째, 광산의 開探에 있어서 混入潛探를 막기 위하여 農商工部는 鎳票를 발행하고 이를 영파원에게 보내고 영파원은 다시 세감에 주고 세감은 德大에게 주고 덕대는 자기가 거느린 鎳夫에게 支給하고 광부는 이를 휴대하여 조사할 때마다 이를 제시한다.

열째, 덕대가 거느리는 광부의 세금을 받을 때에는 광부 10명에 대한 세금은 1名分의 세금을 감세하며 10名미만인 경우에는 감세하지 않는다. 火工, 水工등의 雜役노동자는 정세를 면제한다.

열 한번째, 광부는 1人當 매월 1개월분의 세금을 2회에 나누어 金 3푼 5리를 납세해야 한다.

열 두째, 세감이 鎳票를 德大에게 발급할 때에 1票당 手數料로 銅貨 5分을 징수하고 이를 영파원에게 보내야 한다.

열 세째, 鎳票를 갖지 않고 潛探한 자의 砂金은 이를 没收하고 重罰해야 한다.

열 네째, 각 鎳區의 鎳夫가 이 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해당 지방관에게 보내어 裁判하게 한다.

열 다섯째, 德大가 稅額을 逋脫하고 도망했을 때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補償하게 한다. 稅監이 徵稅한 세금을 隱匿하거나 逋脫—徒走하였을 때에는 그 규모를 조사하여 영파원에게 변상케 한다. 영파원이 徵收한 세금을 隱匿하여 清算報告한 것으로 僞裝하였을 때에는 농상공부는 이를 조사하여 辨償을 명하고 罷免한다.

열 여섯째, 광맥 가운데 田畠이 있을 때에는 그런 畠으로부터 50보 이내의 땅을 침입 채굴할 수 없다. 광맥 중에 家屋 또는 墳墓가 있을 때에는 그로부터 50보 이내의 땅을 침입 채굴할 수가 없다. 만일 該當墓地의主人 또는 家屋의主人이 移場 또는 轉出을 원할 때에는 좋은 값으로 買收할 수 있다. 또 만일 該當地方의 公의 인 의견이 그 土地를 賣渡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強制로 賣渡할 수 없다.

열 일곱째, 금·은·銅·鐵·石炭 기타의 각 광산이 개발되지 않은 것은 開發을 허락하고 개발중에 있는 것은 당분간 舊例에 의하여 정세하고 보고해야 한다. 徵稅書를 開設한 후에는 각 稅監이 德大로부터 徵收한 세금 및 手數料를 그 관할 各 鎳監理에게 송부해야 한다. 각 광감리는 영수증을 稅監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條例를 근거로 鎳務를 담당하는 官吏는 어떻게 임명되었는가? 이에 대한 充分한 實證的 資料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약간의 發見된 자료를 기초로 살펴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일찌기 開港前에 있어서는 柳承宙의 연구와 林炳

勲의 研究가 實證的으로 提示하는 바와 같이 서울에 있는 富商大賈나 高官이 추천하는 사람이 別將으로 파견되었던 것이었고 이들은 收稅뿐만이 아니라 수탈을 일삼았으며 통시에 物主의 役割을 한 측면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開港후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史料는 부분적으로나마 이를 뒷받침한다.

1901年 2月 23日字 합경남도 장진군수가 내장원경에게 보내는 행정보고문서(제2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장진군에 거주하는 林炳元이가 작년에 강제, 후성, 자성 三郡礦務派員을 친거할 때 1년 稅額을 40兩重으로 酌定하였다.」⁵⁷⁾ 여기서 추천한 林炳元이란 者는 1906年의 규장각소장자료에 의하면 順安礦의 德大名單에 등장하는 者이다.⁵⁸⁾

平理院 裁判長 李南熙가 1903年 11月 26日字로 内藏院卿 李容翊에게 보내는 다음의 照會公文書는 日本人 金礦業資本家에게 石礦을 潛賣契約하는 不法事態를 다루고 있다.

「南署 筆洞에 살고 있는 前議官 張正玉이 日本人 地村清公에게 陰城郡 沙井面에所在하는 石礦을 潛賣契約하고 貴院(內藏院)의 訓令과 金礦派員 李容泰의 差出別將差帖을 紙幣 1,000元에 팔아 넘기고 그 값을 받을 때 故院(平理院)에서 포착・조사하여 이 差帖과 貴院訓令을 押收하여 審查해 보니, 그 情節의 紹露가 여지 없으니 장차 法에 따라 판결하겠으며 別將差帖과 貴院 訓令과 潛賣契約書의 등본을 첨부하여 보내어 照會하오니 照覈하심을 바라나이다.」⁵⁹⁾

이 자료는 外國資本의 物主制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관리의 임명과정에 대한 것도 說明하여 주고 있다. 여기서 張正玉이란 者는 前議官이라는 官吏로만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張正玉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새로운 矿業法이 實施되었을 때 忠南 公州郡의 矿山에서 派員의 경력을 가진 자로 1907年에 이르면 王室 經理院 관할광산의 採掘許可權을 받은 者로 등장한다. 따라서 張은 오래전부터 官吏일 뿐만 아니라 矿山經營에 깊이 관여하면서 수탈해 온 物主이었음을 놓고질게 시사하여 주고 있다.

문제는 張이 王室 소속 관리임명의 최고권한을 가진 내장원경과 결탁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史料로는 증명할 길이 없다. 다만 우리는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開港前의 광산관리의 임명과 마찬가지로 광산경영에 깊이 관련된 業者

57) 규장각 도서번호 19161의 2권 2월 23일자 보고서 참조.

58) 규장각 도서번호 21936 참조.

59) 奎章閣 圖書番號 19146 各府部來牒 6卷, 光武 7年 11月 26日字 照會公文 第2號 參照.

또는 物主 또는 高官이 開港後期에도 광산관리의 임명에介入하고 있다는事實을 어느 정도는 설명하여 준다고 생각된다.

稅金은 어떻게決定되었는가? 1895年的條例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鐵夫 1人當金 3分 5分厘를 月 2回에 걸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鐵山에 對한 관할권이 宮內府로 옮겨지면서 鐵區의 開發이 허가될 때 稅金은 鐵脈의 豊殘에 따라 미리決定되는 것으로 보인다.例컨대 평안북도 강계, 후창, 자성 三鐵의 鐵務派員任命過程을 보면 稅金이 事後的으로 生產性을 기준으로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광맥의 풍간에 따라 鐵區의 章程에 따라 미리決定되었던 것이다. 이는 收稅成冊에서 도 증명되는 사실이다. 이 論文에서 收稅成冊은 고용규모를 파악하는데 사용했지만, 收稅成冊의 末尾에는 반듯이 章程의 規定에 따라 鐵夫 1人當 몇分重으로 과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의 세금의 부담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과연 현실과 부합하는 것이었는가? 이에 대한 자료는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다만 몇 개의 史料를 기초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例컨대 광무관리의 임명이 광산관리자 또는 物主와 관련되어 임명된 것임을 인정한다면 여기에는 收稅成冊의 作成에 있어 관리와 物主 및 德大와의 협잡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가 하나 있다. 즉 Royal Asiatic Society의 Korea Branch에서 發刊한 R.A.S. Vol. VII에 발표된 Mining Industry in Korea의 글에서 美國人은 韓國의 生產實態와 고용통계는 믿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세금을 포함하기 위하여 과소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⁶⁰⁾

그밖에 각종 잡세도 부과되었다.例컨대 順安金礦의 경우 세금 이외에 조동자 1人當 1회에 5厘重씩 잡세가 부과되었는데 모두 德大가 부담하는 것이며 탈세가 많아서 실제로 1/3밖에 징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잡세의 세율은 금광위원회의 권한에 속했는데 실질적으로 감리서의 관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한다.⁶¹⁾

이상의 分析을 通해서 볼 때 法制面에서나 實態面에서 收稅政策의 性格은 王室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集權的 封建制下에서 거두어들이는 封建地代에 불과하며 近代的租稅라고는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광부관리의 임명과정과 부패에 대한 실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관

60)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R.A.S. Vol. VII. part I 1916. p. 12 참조.

61) 「韓國鐵業調書報告」順安鐵脈 참조.

리의 차취가 매우 심했던 것을 추측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礦業의 德大經營이 發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광맥의 豐殘과 노동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生產性이 중요한 한 요인되었을 것이며 뒤의 第3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市場條件이 경쟁적 상태下에서 金價格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었고 동시에 국내적으로 동전제下에서 또는 半殖民地的 近代貨幣制下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그 效果가 鑿業者에게 Profit inflation으로 作用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